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정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9385

발의연월일: 2023. 1. 10.

발 의 자:조정훈·김민석·유상범

윤미향 • 윤재갑 • 이동주

이정문 · 최승재 · 최연숙

최형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,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함.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문제, 지역불균형 문제, 산업현장 및 농어촌 지역 인력난 문제 등 의 대안 마련에 외국인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.

현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·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여야 하고,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·대학,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와 관련, 2009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(UN IOM)간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이민

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음.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않아 타 국가정책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 및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,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해 명확히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이민정책연구원) 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민정책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-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
- ③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세계 각국의 외국인·이민정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·연구·자문 ·정보교환
- 2. 외국인 · 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사업
- 3. 외국인·이민정책 관련 국제교류·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·지원 사업
- 4. 외국인ㆍ이민정책 관련 학회 및 학술활동 지원 사업
- 5. 외국인·이민정책 관련 학술자료·정기간행물·보고서 등 출판물의 발간·보급사업
- 6.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
-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

다.

-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IOM 이민정책연구원(이하 "종전의 연구원")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으로 본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이 행한 행위로, 종전의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.
 - ③ 제1항의 경우 종전의 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민정책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본다.
 -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연구원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이민정책연구원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 설> 제9조의2(이민정책연구원) ① 제9 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민정책연구원(이하 "연구원" 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. ②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세계 각국의 외국인・이민정 책과 입법에 관한 조사・연구 · 자문・정보교환 2. 외국인・이민정책 전문가 양성 사업 3. 외국인・이민정책 관련 국제 교류・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 · 지원 사업

- ④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

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

 을 둔다.
- ⑤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

 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

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

 다.
-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

 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

 지원할 수 있다.